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## [고영찬 의원 발의]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2277 |
|------|------|

발의일자 : 2022. 11. 10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

### 1. 제안이유

최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,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분쟁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라. 임차인 보호사업의 추진(안 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2022. 11. 11. ~ 2022. 11. 17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금천구” 라 한다)의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금천구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금천구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임차인 보호사업)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
2.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
3.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
4.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